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, 식별불개시 선정에서 제외 되오니 최종 제출 전 본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※ 마이데이터 미동의자용

### 신청 문의 사항 콜센터 : 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

	202	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			
신청자격	연령	<ul> <li><u>접수 기준일('24.6.1)</u> 현재 만 <b>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<sup>*</sup></b></li> <li>* 1984.6.2.~2005.6.1. 출생자</li> <li>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</li> </ul>			
	거주지	- <u>접수기준일('24.6.1.)</u>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			
	근무조건	<ul> <li>경기도 소재 중견·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법인*에 주36시간** 이상 근무 하고 3개월 이상 재작한 근로자 (동일 사업장에서 재작) ('24.3.1.(포함)이전 고용보험가입자까지 가능)</li> <li>* 비영리법인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</li> <li>*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시업 참여를 허용함</li> <li>※ 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</li> <li>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('24년 3월, 4월, 5월) 평균 118,500원 (월 과세급여 334만 원) 이하인 자</li> <li>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('24년 3월, 4월, 5월)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</li> </ul>			
신청불가 사유	참여자격 미충족	-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* * 대기업,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(사업자 번호 83) 근로자 등			
	중복사업 참여여부	<ul> <li>접수기준일('24.6.1.)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(아래 사업) 참여 이력이 있는 자*</li> <li>*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,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 해지자 및 자격상실 처리자 포함</li> <li>중복 참여 불가 사업</li> <li>·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 일하는 청년통장)</li> <li>·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 청년 연금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舊 청년 미이스터 통장) (단, 해당 사업 참여자여도 접수기준일('24. 6. 1.)이전 정상 종료 후에 는 참여 가능)</li> <li>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연금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 원사업) 동시 참여 불가</li> <li>·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※ 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</li> </ul>			
	기타사항	-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 / 휴직자 (육아휴직 포함) / 군인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			

#### □ 사업신청 프로세스(목차)



#### □ 사업신청 프로세스별 세부사항



TEP 2.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			
□ 잡아바 회원가입			
병개도입자리자(다) 정년 노동자 지원사업     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     청년 북지포인트       청년 연금       참여접수       소식안내       프 옷       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     청년본지포인트 1년간 120만원(포인트) 지급!       청년연금       문고인 용 체원가입	○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( <u>https://youth.jobaba.net)</u>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<b>회원가</b> 입 버튼 클릭		
체용정보 지원정책 잡아바리님센터 일저리 사업신청 통합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			
AGRAN AGRAN AGRAN AGRAN AGRAN AGRAN AGRAN AGRAN A	<ul> <li>갑아바 홈페이지 (http://www.jobaba.net) 회원가입 화면으로 접속 후 회원가입하기</li> </ul>		
※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(https://youth.jobaba.net) 로그	2인 화면에서 회원가입하는 방법		
<ul> <li>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려면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.</li> <li>고용지원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먼저 회원가입 을 해주세요.</li> <li>이메일주소 형식으로 입력하세요.</li> <li>숫자.문자.특수기호를 포함한 8자 이상</li> <li>로그인</li> <li>아이디 찾기</li> <li>비밀번호 찾기</li> <li>회원가입</li> </ul>	○로그인 화면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면 잡아바 회원가입 화면으로 접속되며, 회원가입 가능		



STEP 4. 신청자 본인 확인	
□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>	정보 동의 후 인증 진행
한 전체 등의 전체 등의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<ul> <li>개인정보 동의 후 핸드폰 본인인증하기(하단) 시작하기 클릭</li> <li>신청자 성명과 본인명의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 진행</li> </ul>
핸드폰 본인인증 하기       IPIN 본인인증 하기         IPIN 본인인증 하기       IPIN 본인인증 하기         IPIN 분인인증 하기       IPIN 분인인증 하기         IPIN 분인인증 하기       IPIN 분인은 이 IPIN IPIN IPIN IPIN IPIN IPIN IPIN IP	<ul> <li>개인정보 동의 후 아이핀 본인인증하기(하단) 시작하기 클릭</li> <li>신청자 본인의 아이핀 계정으로 본인인증 진 행</li> </ul>

STEP 5.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			
□ 신청자 기본 위	인적 사항 화면		
Step. 1 - 신청자 기본 인적 사	향	~	
이름	<u>800</u>		
주민등록번호 💿 🚺	94**** 실명인증		
연락처 2	010 - 0000 - 0000		
이메일 ③ 3	youthgjf@gjf.or.kr		
병역사항	<ul> <li>명역 복부 완료 · 복부 중 · 미월자(면제사 포암)</li> <li>입영일:</li> <li>전역일:</li> </ul>		
5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③	주소지 검색 경기도 부천시		
비상연락처 💿   6			
7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③ ※ 주민등록등본 인정 볼가	파일 선택 02.png 을바른 주민등록표초본 예시 주민등록 초본 발급 링크 ※ 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문서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, 병역여부 표기, 인적사태 (개명), 과거 주소 변동(최근 5년) 내역(발생일/신고일)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.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부적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	항변경	
Step. 2 - 근무사항(재직자 ?	정보)	~	
Step. 3 - 근무사항(현 직장	Step. 3 - 근무사항(현 직장 정보) ~		
Step. 4 - 기타 서류(해당자(	게 한함)	~	
구분	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방법	법	
❶주민등록번호	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버튼 클릭 ※ 실명인증 불가시 http://www.niceid.co.kr 의 (우측 상단) - [아이핀 관리 및 실명등록]에서 실명등록 후 신청		
❷연락처	본인연락처(자동입력) ※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사항 역	알림	
<b>❸</b> 이메일	이메일(잡아바 아이디 자동입력)		
<b>④</b> 병역사항	병역사항 입력(병역복무 중 신청불가) - 입영일 / 전역일 입력 - 병역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나이가 만 39세 이하면 지원가능		

❺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	주소지 검색 클릭 후 주소 입력 - 접수기준일('24.6.1. 포함)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여 부 확인되어야 함. - 접수기준일('24.6.1.제외) 후 타지역 거주 시 부적격(선정 제외)
❻비상연락처	본인 연락처를 제외한 연락 가능한 번호입력 - 본인 연락처로 연락 두절인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[지원금 지급 등 반드시 확인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연락드립니다 (발신번호 : 1577-0014)] ※ 비상연락처는 보호자, 동거인 등 밀접 관련자 연락처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
⑦주민등록표초본 첨부	주민등록표초본 첨부(접수기준일(' 24.6.1.)포함 이후 발급분만 인정) - 반드시 예시 파일 확인 후 발급 및 첨부 -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시 부적격(선정 제외) - ' 24.5.31.(포함) 이전 발급분은 부적격(선정 제외) - 과거의 주소변동(최근 5년)포함(발생일/신고일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병역사항 전체 반드시 포함 (누락 시 부적격(선정 제외)) -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(zip) 또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전부 첨부



구분	재직자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방법			
❶4대사회보험 가입여부	가입여부에 <b>'가입'으로 체크한 경우 <u>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</u> <u>험에 가입</u>되어야 신청 가능 ※ 미가입자가 '가입'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부적격(선정제외)</b>			
	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선택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고용보험 취득일 입력 ※ 오기재 또는 누락, 증빙자료와 불일치는 부적격(선정 제외) ※ 아래의 사례로 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이 수정이 필요할 때, 고용보 험 가입일 수정 후 이를 증빙할 추가서류 첨부			
	사 례	입 력(고용보험 기입일)	증빙서류(첨부)	
	기업합병에 따른 <mark>고용승계</mark>	고용승계 전 취득일	+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+ 고용승계확인서	
❷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		계약적으로 취업했을 때의 고용도험 취득일/ 해당 시업장 최초 고용도험 취득일	+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+ 사유서 ※ 참여자정보, 사유, 일자, 신청인·사업장 직인 필	
	개인→ <b>법인전환/</b> 사업장 상장	개인시업장일 때의 취득일/ 시업장 상장 전 취득일	+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+ 법인등기부등본	
	계열사 발령	계열사 <b>인사발령 전 취득일</b>	+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<b>+ 인사발령문</b>	
<b>③</b> 근무기간	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접수기준일('24.6.1.)까지 자동 산정됨 -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<b>'24.3.1.(포함) 이전인 경우만</b> 신청 가능			
<b>④</b> 근무형태	상용직, 계약직 선택하여 해당 사항 입력			
<b>⑤</b> 상시근로자 수	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수 입력			
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서 첨부	<ul> <li>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</li> <li>- 반드시 예시 파일 확인 후 발급 및 첨부</li> <li>(발급 : 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)</li> <li>- '24.6.1.(포함) 이후 발행분만 인정</li> <li>- '24.5.31.(포함) 이전 발급분은 부적격(선정 제외)</li> </ul>			
⑦현 직장 근무시간	현 직장 근무시간: 신청 * 근로기준법 제50조( - 육아기 근로시간 단력 ※ 단, 육아기 단축( ※ 육아기 근로시간	지 본인의 <b>현 직장 근무시간</b> ( <b>근로시간) 1항</b> 에 따라 <b>휴게</b> (지(단축 전 근무시간): <b>해당지</b> 근로자 근무시간은 주 <b>15시간</b> ( 단축 확인서(관할노동청)를 기	<b>(주간)*입력</b> 시 <b>간은 제외</b> <b>1만 입력</b> 이상이어야 함 타 서류에 첨부	



<b>9</b> 3개월 건강보험료 입력	건강보험료('24년 3월, 4월, 5월) 산정보험료 입력 -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[직장보험료조회]의 산정건 강보험료 3개월분 입력(2024년 3, 4, 5월) **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[직장보험료조회] - (콜루: https://www.rhis.or.kr/rhis/minwor/jpZac00110.db)의 산정보험료 압력 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란은 자동 산정 * 54,700원 미만인 경우, 주 36시간 미만 근로에 따라 부적격(선정 제오) - 단, 최저임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면 추가 제출서류* 첨부 요망 * 추가서류 예시 : 수습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산청서, 유효기간 내 장애인 복자키드 등
❶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 ※ 접수가준일(24.6.1.) 포함 이후 발급분만 인정 (발급 : <u>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jpAea00101.do</u> ) - 반드시 예시 파일 확인 후 발급 및 첨부 - '24.5.31.(포함) 이전 발급분은 부적격(선정 제외) - (하단) 공단 직인 누락 시, 부적격(선정 제외)
④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세조회 내역	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[직장보험료조회] -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현재직장 출력 (출력 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jpZaa00110.do) - 단, 법인전환/사업장 상장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이력이 변경된 경우 현재직장 외 법인전환/사업장 상장 이전 내역도 제출 필수 - 반드시 예시 파일 확인 후 발급 및 첨부 ※ (필독)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세조회 내역 일부만 사진 캡쳐해서 제출하는 경우 필수 정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(부적격). 누 락된 정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유념하세요(2024년 3~5월 보험료 내역 반드시 포함) ※ 모바일의 경우 The건강보험 앱에서 캡처 기능을 지원하지 않 으므로 가급적 PC를 통한 발급 요망(모바일 조회화면을 타 단말 기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형태는 타인 정보도용 등의 문제로 불인정)



2 현 직장 취업일	근로계약서상 취업일
<b>③</b> 근무기간	취업일로부터 접수기준일('24.6.1.)까지 자동 산정됨 - 취업일이 <b>'24.3.1.(포함) 이전인 경우만</b> 신청 가능
④근무형태	상용직, 계약직 선택하여 해당 사항 입력
⑤상시근로자 수	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수 입력
❻근로계약서 첨부	근로계약서 첨부 - 반드시 예시 파일 확인 후 첨부 - '24.3.2.(포함) 이후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부적격(선정제외) - 근로계약서(근로계약서 형태의 임용계약서)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, 위촉계약서, 용역계약서 등은 부적격(선정 제외) - 취업일, 주 근로시간, 월급여액, 작성일자가 누락된 경우 부적격(선정 제외) * 주요 빈번 불인정 사례 ① 근로계약서 상 4대보험 관련 공제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나, 명백하 게 가입된 자로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② 주 36시간 근무자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③ 상여금 등 기본급여 외 추가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에 대한 지급 기 준 및 지급시기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여 월 급여액에 환산 적용 할 수 없는 경우 ex) 표준근로계약서 상 상여금 있음 체크 후 금액 미기재, 상여금 기재되어 있으나 산정 범위가 연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또는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내인지 특정 불가 등
⑦현 직장 근무시간	<ul> <li>현 직장 근무시간: 신청자 본인의 현 직장 근무시간(주간)*입력</li> <li>*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 1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제외</li> <li>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(단축 전 근무시간): 해당자만 입력</li> <li>※ 단, 육아기 단축근로자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</li> <li>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(관할노동청)를 기타 서류에 첨부</li> <li>- 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체크되었더라도,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조건 불충족으로 부적격 처리</li> </ul>
⑧월급여액 기재	<ul> <li>- 근로계약서의 월 급여액 또는 각 월에 연봉의 1/12 입력</li> <li>- 통장 시본에 명시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입력</li> <li>※ 1,543,000원 미만인 경유, 주 36시간 미만 근로에 따라 부적역(선정 제2)</li> <li>- 단, 최저임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면 추가 제출서류* 첨부 요망</li> <li>* 추가서류 예시 : 수습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 수월액 변경신청서, 유효기간 내 장애인 복지키드 등</li> </ul>







구분	근무사항(현 직장 정보)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방법
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후 기업검색 클릭 ※ 중간번호 83(지자체)인 경우 신청 불가
❷사업자 등록증 첨부	사업자등록증 첨부 - <b>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</b> 첨부
❸기업명	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 검색 시 자동입력 ※ 자동으로 입력(조회)되지 않을 경우, 직접 입력
❹기업규모(분류)	사업자등록번호 <b>기업 검색 시 자동분류</b> ※ 임의 지정 불가
<b>⑤</b> 사업장등록지	사업자등록번호로 <b>기업 검색 시 자동입력</b> ※ 자동으로 입력(조회)되지 않을 경우, 직접 입력
❻근무지와 실근무지 동일 여부	해당사항 체크 - 예: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실근무지 같은 경우 선택 - 아니오: <u>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</u> 선택 ※'아니오'에 체크한 경우 실근무지 정보 추가 입력
●사업자 등록번호	실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※ 소속 근무지와 실근무지 다를 경우
③실근무지 시압자등록증 첨부	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(또는 증빙서류) 첨부 ※ 아래 서류 중 택 1(반드시 예시파일 확인 후 첨부) - 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 - 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 - 실근무지의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발행문서 (신고증, 확인서 등) - 공장근무자의 경우 소재지가 증빙되는 공장등록증 - 사업장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서 - 기타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서류
<b>9</b> 근무처명	실근무지 근무처명 입력
●전화	실근무지 전화번호 입력
●근무지(사업장) 주소	실근무지(사업장) 주소지 검색을 통해 주소 입력
ित्मम्य प्रदे	재직 직장의 대표적 업종 입력



❷사업자 등록증 첨부	현 근무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※ 첨부된 사업자 등록증의 <b>사업자 등록번호, 사업장명</b> 과 <b>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</b> 등록번호와 사업장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
❸기업명	사업자등록번호로 <b>기업 검색 시 자동입력</b> ※ <b>자동으로 입력(조회)되지 않을 경우, 직접 입력</b>
❹기업규모(분류)	사업자등록번호 <b>기업 검색 시 자동분류</b> ※ 임의 지정 불가
<b>⑤</b> 사업장등록지	사업자등록번호로 <b>기업 검색 시 자동입력</b> <u>※ 자동으로 입력(조회)되지 않을 경우, 직접 입력</u>
6근무자와 실근무지 동일 여류	해당사항 체크 - '예'체크한 경우: 사업장 등록지와 실근무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※ 즉, 고용임금확인서상의 실 근무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이며, 주소 지가 상이한데 '예'에 체크한 경우 부적격 처리 - '아니오' 체크한 경우: 사업장 등록지와 고용임금확인서상의 실 근무 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※'아니오'에 체크한 경우 실근무지 정보 추가 입력
●사업자 등록번호/ ●근무처명	상단에 기업 검색한 사업장 등록번호와 기업명이 동일하게 입력 ※ 상이한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, 콜센터(1577-0014)로 추가 문 의 필요
❸실근무지 시업자등록증 첨부	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(또는 증빙서류) 첨부 ※ 아래 서류 중 택 1(반드시 예시파일 확인 후 첨부) - 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 - 실근무지 주소가 명시된 재직증명서(접수기준일(24.6.1.)포함 이후 발급) - 실근무지의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발행문서(신 고증, 확인서 등) - 공장근무자의 경우 소재지가 증빙되는 공장등록증 - 사업장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서 - 기타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서류
①건화	실근무지 전화번호 입력
●근무지(사업장) 주소	실근무지(사업장) 주소지 검색을 통해 주소 입력
● पम्मय 업종	재직 직장의 대표적 업종 입력

STEP 8. 타 사업 참여 여부 확인		
□ 타 사업 참여 여	부 확인 화면	
Step. 4 - 타 사업 참여 여부 후	1인 ^	
탄 사업 참여여부	<ul> <li>타 사업 참여 중이 아님</li> <li>타 사업 참여 중</li> <li>청년 노동자 통장</li> <li>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청년 복지포인트)</li> <li>※ 유의: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,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청년 복지포인트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 참여자)과 중복 참 여가 불가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.</li> </ul>	
구분	타 사업 참여 여부 체크하는 방법	
❶타사업 참여 중 아님	현재 <b>타 유사 사업*</b> 참여 중이 아닌 경우 * 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연금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, 청년 복지포인트)	
2타 사업 참여 중	현재 청년 노동자 통장(舊일하는 청년 통장),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<b>참여 중인 경우 '청년 복지포인트' 선정에서 제외</b> 됩니다. - '타 사업 참여 중'에 체크한 경우에도 신청서가 제출되나, 추후 검증 과정에서 선정 제외됩니다. -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(1577-0014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* '타 사업 참여 중 아님'으로 체크한 경우에도 향후 타 사업 중복 참 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처리 진 행하오니, 본인의 중복사업 참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부탁드립니다.	

#### STEP 9. 기타서류(해당자에 한함)

기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STEP 10. 입력정보 확인			
□ 입력정보 확인	화면		
참여접수	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※ 본 화면에서 영로드한 파일을 플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화면에서 기업한 대용을 다시 한번 파인하시기 바랍니다.		
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		_	
> 청년복지포인트 접수	신청자 기본 인적사항	~	
	근무사항(재직자 정보)	~	
	근무사항(현 직장정보)	$\sim$	
	타 사업 참여 여부	~	
	기타 서류	~	
	2 입력한 내용이 맞습니다.		
	<ul> <li>신청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.</li> <li>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잘못 기재, 허위기재 및 대리 신청, 지원금 대리 수령 등 사업 참여가 불가 사유가 발견되면 이후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</li> <li>선정 이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(약정서 제출, 청년물 가입 등) 불이형시 자격 상실 처리팀을 확인하였니다.</li> <li>해당 사업은 분기별 자격조건 유치검증(사업 자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)을 이행하여야 유지가 가능합니다.</li> </ul> 지원자           지원자	2 월 있습	
	이려저님 화이 바버 미 치조제츠		
	입약경도 확한 경합 및 죄중세물		
	본 화면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입력 사항 확인 가능		
❶입력정보 확인	※ V 버튼을 클릭하여, 각 단계별 입력정보(첨부파일 포함) 반드시 확인		
	※ 입력정보(공방사류 포함)의 <b>오기짜, 미기짜, 누락은 부적역(선발 제외)</b>		
❷내용 확인	'입력한 내용이 맞습니다.'에 체크		
③유의사항 확인	최종제출 전 안내 사항을 확인 후 '상기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어 합니다.'에 체크	동의	
④최종제출	최종제출 클릭		



# 신청 중 문의 사항은 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